

## 가야산·주왕산 국립공원관리 협력을 위한 대구대학교와 국립공원관리공단간 관학협정서

대구대학교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 및 주왕산국립공원의 보호·관리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정서는 양 기관의 상호관심과 이해분야에 관한 당사자간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협력활동) 본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
가. 가야산·주왕산국립공원 조사의 공동 추진

- ① 자연자원 조사 모니터링
- ② 탐방객 이용형태 조사

나. 가야산 주왕산 국립공원의 관리정책 및 보호활동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·포럼의 공동 개최

다. 교육활동

- ① 대구대학교 학과일정으로 국립공원관련 교과목 개설
- ② 대구대학교 관련학과 수업에 가야산 주왕산 사무소 직원 출강
- ③ 가야산·주왕산 사무소 직원교육을 위한 대구대학교 교직원 출강
- ④ 가야산·주왕산 사무소 직원의 국립공원 관련 수업 청강

라. 가야산·주왕산 국립공원 관리 참여

- ① 대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국립공원 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장려
- ② 가야산·주왕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 지원

마. 시설활동

- ① 대구대학교 교직원의 가야산·주왕산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
- ② 워크숍 및 포럼개최를 위한 대구대학교 시설 이용

제3조(신의성실 및 호혜원칙) 이 협정서에서 정한 협력활동은 쌍방간의 신의성실 및 호혜원칙에 따라 정한다.

제4조(비용부담) 본 협정서에 의해 일방 당사자가 추진하는 행위의 비용부담은 당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일방의 이익이 발생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은 상호합의에 의한다.

제5조(효력)

가. 이 협정서는 쌍방 책임자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3년간 유효하며, 상호합의에 따라 3년간 연장된다.

나. 이 협정서의 효력은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하여 그 효력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료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추진된 협력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협력사업의 종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제6조(기타)

가. 본 협정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한다.

나. 본 협정서를 2부 작성, 날인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6. 3. 29

1956-2006

대구대학교

국립공원관리공단

이 용 두

총 장 이 용 두

김재규

이사장 김재규

이주희

야외휴양연구소장 이주희

제영해

가야산사무소장 제영해

정석원

주왕산사무소장 정석원